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367호

「공무원징계령」 제19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납입되지 않아,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현재 대상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 게재 이유 및 주요 내용

대상자에 대한 공무원 징계부가금 납부를 독촉하려는 것임

2. 대상자(징계등 혐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징계부가금
손 * 진	1997. 7.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08길 소재	17,486,610원

3. 공시기간: 2026. 7. 10.~2026. 7. 24. (총 15일)

4. 기타안내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4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가산금 징수, 압류 등)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공무원징계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징수 의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원 주무관, 044-202-7866, jtw102@korea.kr)

[V]징계처분
[V]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대*****청	행**기	손*진

주문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로 의결한다. ※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 5,828,870원
----	--

이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사본과 같음 (고용노동부 및 대상자의 소속기관에서 직접 교부)
----	---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